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66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 강경숙・황운하・정을호

조 국・김준형・신장식

진선미 · 최민희 · 고민정

박은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두어 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고 있음. 자동 부의 대상에는 예산안 외에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포함되는데,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지정은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표시한법률안을 대상으로 하여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중대한 쟁점으로 인하여 계류된 법률 안을 국회의장이 상세한 절차 없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하는 것은 자의적인 지정의 가능성이 있고 법률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누락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제도가 균형있고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5조의3).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3제4항 중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를 "소관 위원회위원장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 ③ (생	자동 부의 등)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	4
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	
하여야 하고, 의장은 <u>국회예산</u>	소관 위원회
<u>정책처의 의견을 들어</u> 세입예	위원장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
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u>견을 들어</u>
다. <u><후단 신설></u>	
	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위
	원회 위원장과 국회예산정책처
	의 의견을 국회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
	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